

#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

※ 개설 문의안내 : 3151-5900

지원사업명 : 2019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

## 1 보조금전용통장

- 상 품 명 : 우리보조금관리통장
- 예금과목: 보통/기업자유, (종합통장정보 : 구분- 보조금통장 / 종류- 1.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)
  - \* 상품변경 가능하며 보조금이 기입금된 경우, 02140 거래(고객등급/수수료면제 관련 특인거래) 처리 필요 (고객등급코드 445000, 등급적용기간 : 당일~익년 해당월 15일)
  - \* 자부담통장은 일반 요구불계좌 개설로 신규(자부담통장은 타행도 이용 가능)

## 2 보조금 전용카드

- |   |   |
|---|---|
| - 보조금전용 체크카드<br>개인(223231), 단체/법인(223227) | - 자부담전용 체크카드<br>개인(226402), 단체/법인(226415) |
|---|---|
- \* 우리은행 자부담카드 발급시 지출결의서 작성 용이함(자부담카드는 타행도 이용 가능)

## 3 인터넷뱅킹 가입 및 스피드계좌 등록

- 보조금 전용통장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가입 및 스피드계좌 등록 (12500 거래 - 항목변경코드 : 007001)
- 스마트뱅킹 앱 설치(원터치개인, 원터치기업) → 제로페이 사용 필수
  -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(필수)
  - 원터치알림서비스 가입(법인제외)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알림서비스 가능(무료)

제출서류 (계좌개설, 체크카드,인터넷뱅킹) ※ 원본서류 제출요망

구 분	개 인	단 체	법 인
본인 또는 대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 등)</li> <li>• 도장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</li> <li>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</li> <li>• 도장</li> <li>• 정관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증</li> <li>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</li> <li>• 법인인감증명서</li> <li>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</li> <li>•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</li> <li>• 정관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
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장개설만 가능</li> <li>• 본인의 실명확인증표(사본가능)</li> <li>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</li> <li>• 위임장</li> <li>• 본인의 인감증명서</li> <li>• 도장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</li> <li>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</li> <li>•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</li> <li>• 도장</li> <li>• 정관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증</li> <li>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</li> <li>•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</li> <li>• 법인인감증명서</li> <li>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</li> <li>•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</li> <li>• 정관</li> <li>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</li> </ul>

- ※ 유의사항
1. 법인인감증명서·법인등기부등본·개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)
  2. 법인 및 단체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(다음 중 하나)
    -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  - 계좌개설 요청공문(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등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)
  3. 비영리단체 통장신규 고객확인 업무시 설립목적 확인 필요 (준법:060-1120, 2015.03.17)  
→ 정관 등 (홈페이지의 설립취지 등 출력도 가능)
  4.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
    - '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' 제출(세무서발급)
  5. 비영리단체 통장신규 고객확인 업무시 설립목적 확인 필요(정관 등)

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.

서울시 문화예술과 (직인/사인)

담당 주무관 성명 : 김광원 (연락처) 02-2133-2578